



제 안 설 명

○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

고 령 군
(도 시 과)

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.

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, 그리고 여러 의원님
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
「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『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』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다산면 평리리 구)다산면사무소 부지에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·교육·복지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

○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, 공모사업 선정 조건으로 국비지원액 83억원의 10%인 8억 3천만원을 주택 도시보증공사(HUG)의 기금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.

○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선정, 사업성 검토, 사업컨설팅 등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,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상생 등의 사유로 기금 활용을 하지 않으면 공모사업 선정이 불가능 하였습니다.

○ 이에 고령군은 공모신청 당시 8억3천만원에 대하여 기금활용 계획을 수립하여

○ 지방자치법 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),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및 제12조(지방채발행의 절차)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조(지방채발행의 절차)에 의거하여 2025년도 1월에 연이율 2%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1년 후인 2026년 1월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.

○ 참고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시 연간 발생 이자는 약 1천 7백만원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.

○ 지방채 발행을 통해 『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』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이상으로

「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도시과장 이 해 봉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지방채 발행 동의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도시과장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지방채 발행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고 령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을 10%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된 「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」을 준용하여,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8.3억원을 편성하여 공모 선정 및 사업승인을 득하였음

나.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의 재원인 도시재생기금 용자 신청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위해 고령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근거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권리)

나. 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및 제12조(지방채발행의 절차)

다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조(지방채발행의 절차)

3. 주요내용

가. 발 행 액 : 8.3억원

나. 기 금 명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도시재생기금

다. 대상사업 :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

라. 발행시기: 2025년 상반기

마. 발행사유 : 도시재생기금 용자 신청

바. 연 이 율 : 2%

4. 추진계획

가. 2021. 09. : 공모사업 최종 선정(국토부)

나. 2022. 10. : 실시설계 착수(특화가로, 마을소통로)

다. 2023. 06. : 실시설계 착수(어울림센터)

라. 2023. 07. : 공사착공(특화가로, 마을소통로)

마. 2024. 11. : 공사착공(어울림센터)

바. 2025. 01. : 지방채(기금) 발행 예정

사. 2025. 12. : 공사준공 및 사업완료 (지역역량강화 등)

아. 2026. 01. : 지방채(기금) 상환 예정

5. 사업개요

가. 위 치 :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일원

나. 사업기간 : 2024년 ~ 2025년

다. 사 업 비 : 10,000백만원(국비 5,502, 도비 917, 군비 2,751, 기금830)

라. 사업내용 : 어울림센터 조성 1식

- 대지면적 A=4,524㎡, 건축면적 A=826㎡, 연면적 A=1,824㎡

- 건폐율 = 40%, 용적률 = 114%

- 용도 : 제 1, 2종 근린생활시설

○ 층별구성

- 1층 : 코인세탁실(안), 관리사무실, 주민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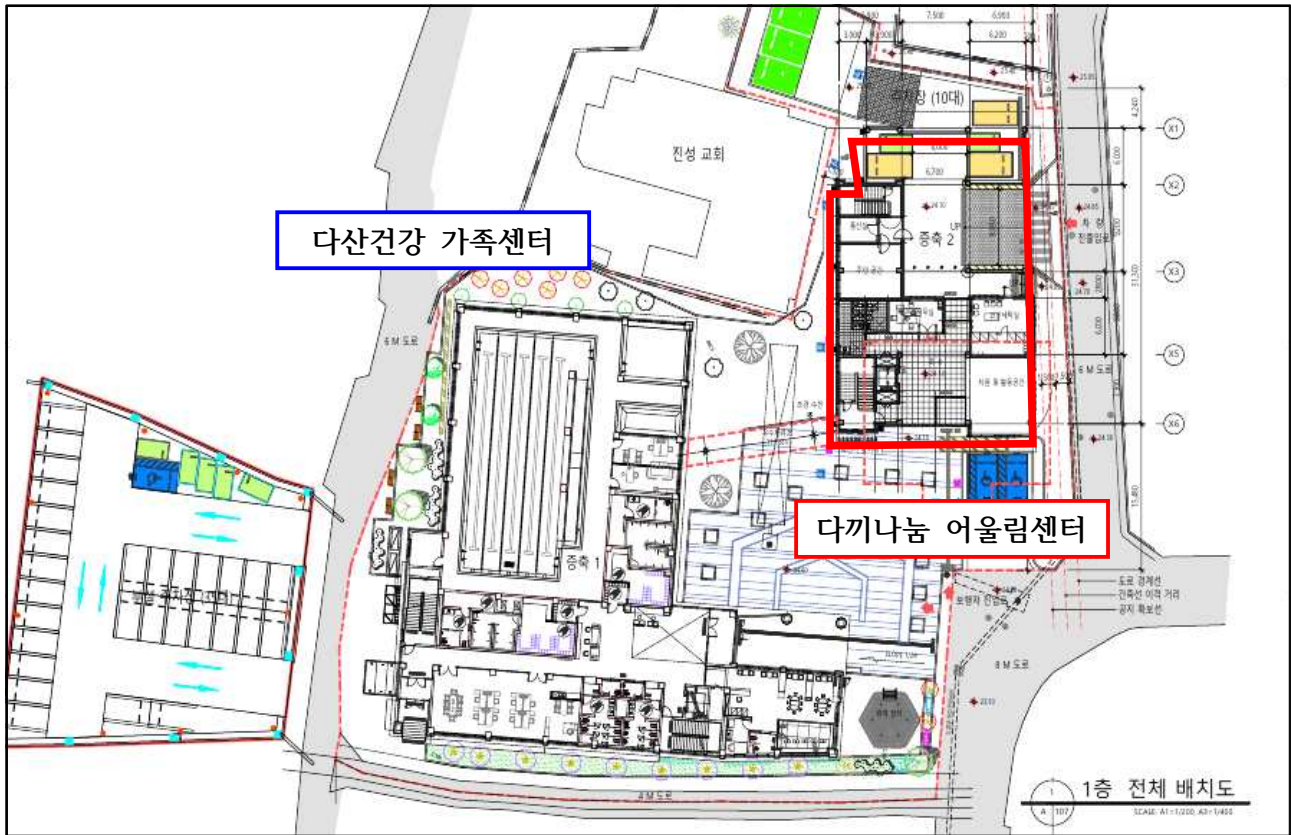
- 2층 : 다산배움관, 정보광장, 3D프린터실, 아카이빙센터,
드론교육실, 문화교류 라운지

- 3층 : 스터디룸, 독서실, 스터디라운지, 도시재생센터, 스튜디오,
창작실, 공유오피스, 휴게실

□ 사업계획 평면도



□ 배치도



□ 조감도



내 삶을 바꾸는
도시재생 뉴딜 로드맵

'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

2021. 9. 13.



□ '21년 신규 선정 유의사항

- (부진 사업) 집행 등이 부진한 기초지자체(서울강북 등 30곳)는 신규 선정 제한(시·도 선정사업은 신청 불가)

(서울) 강북·도봉·동작·영등포·은평·중랑 (부산) 강서·동구·동래·중구·해운대
 (인천) 강화·부평·옹진·연수·중·미추홀 (광주) 광산 (대전) 대전 (울산) 동·중
 (경기) 광명·시흥·의정부·화성·안산 (강원) 춘천 (전남) 진도 (경북) 안동·포항

※ **신규선정 제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정 신규사업 신청 필요 시 부진 만회대책 및 조치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 갖춰 국토부 사전협의**

- (기존 사업지역) 기존에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
 - 다만, 사업이 완료된 지역 또는 진행 중인 지역* 중 활성화지역을 일부 추가·변경(전략계획 변경)한 경우 재신청 가능(사전협의 필요)
 - * 국비지원 사업(H/W) 포함, 주민 갈등 유발, 사업효과 축소 등 예상 지역은 제외
 -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(H/W), 새뜰마을,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 지역 등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 가능 (사업신청 전 신청유형별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)
- (중복신청 불가)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(세부)사업 내에서 생활 SOC복합화사업 등 부처 연계사업과 국비 지원사항이 동일한 경우 선정 순서에 관계 없이 상호 배제

< 적용 예시 >

도시재생 뉴딜사업	부처 연계사업	신청가능 유무
지하 1층 공용주차장 조성(H/W)	지상 공용주차장 조성(H/W)	신청 불가
2층 체육시설 조성(H/W)	1층 체육시설 조성(H/W)	신청 불가
2층 마을 도서관 조성(H/W)	2층 마을 도서관 운영지원(S/W)	신청 가능
2층 동아리방 등 조성(H/W)	3층 금식관리지원센터 조성(H/W)	신청 가능

- (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)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(도시계획 한정) 활용금액이 10%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 배제

- *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이종물사업비 중 국비총액
- ** 단, 우리동네살리기, 혁신지구, 인정사업의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□ **지방자치법 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

□ **지방재정법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 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총당
 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 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 4. 지방채의 차환
 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 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총당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
-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2조(지방채 발행의 절차)

-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, 원금의 상환, 이자의 지급,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(이하 "지방채증권"이라 한다)의 발행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제479조, 제484조,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상법」의 규정 중 "사채"는 "지방채증권"으로, "사채권자"는 "지방채권자"로, "채권"은 "증권"으로 보고, 제479조 중 "기명사채"는 "기명지방채증권"으로, "사채원부"는 "지방채증권원부"로, "회사"는 "지방자치단체"로 본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(지방채발행의 절차)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"지방자치단체조합"이라 한다)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
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
- ⑥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·통보해야 한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중

- (기금 활용 미충족 사업지) 국비 지원액* 대비 기금(도시계정 한정) 활용금액이 10%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 배제 등 기금활용 의무화

* 활성화계획안에 구성된 총 마중물사업비 중 국비총액

** 단, 우리동네살리기, 혁신지구, 인정사업의 경우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**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**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**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**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**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**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**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도시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754